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는 산재보험 대상자에서 제외 안됨

서울고법 2000누6208

(지난호에 이어)

(3) 이 사건 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경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양상이 시신경염과 척수염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나) 다발성 경화증은 그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는지 않지만 유전적 감수성, 바이러스 감염 등과 함께 자가면역질환이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견해가 의학계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다) 의학계 일반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체에 면역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관하여 큰 이견이 없으나 다만, 그 의학적 기준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관계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다. 판 단

(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보험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

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그 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들어 요양비 지급을 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그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라는 신분상의 이유만을 들어 바로 부지급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회사가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도록 승낙하였는지 여부도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에 의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요양비 부지급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나아가 이 사건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자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소외회사의 승낙아래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여 온 점, ② 원고는 평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고, 특히 1995년 5월과 6월에는 임금교섭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 기간 중 쟁의단계에 들어간 기간은 수일에도 미치지 못하여, 쟁의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의학적으로 아직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적어도 자가면역기전의 이상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질병이 과로

와 과도한 스트레스 이외의 유전적 소인 등 다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소외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